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067
----------	------------

제안연월일 : 2022년 2월 14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사업대상을 외국인주민의 자녀로 규정할 경우 교육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외국인주민의 자녀까지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외국인주민의 자녀 중에서도 교육상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함.

2. 주요내용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국인주민 포함)의 자녀 등을 사업대상학생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국인주민 포함)의 자녀 등을 사업대상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사업대상학생) 사업대상학생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다.	제7조(사업대상학생) ① (현행 제목외의 부분과 같음)	제7조(사업대상학생) ①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② <u>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의 자녀나 그 밖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자녀 등을 사업대상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u>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국인주민 포함)의</u> 자녀 등을 사업대상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국인주민 포함)의 자녀 등을 사업대상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대상학생) 사업대상학생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다.	제7조(사업대상학생)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u>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국인주민 포함)의 자녀 등을 사업대상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u>